통상 동향 99-127

일본의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이란?

제공 : 주일농무관 김상범(1999. 7. 21)

일본 농림수산성이 개정을 추진해 온 "농림물자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이 지난 7월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식품표시의 강화

▷일반 소비자용의 모든 음식료품을 품질표시기준의 대상으로 하며 모든 신선식료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였음.

▶유기식품의 검사인증 표시제도 도입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방법에 대해 검사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소비자용 유통체계를 정비

▶JAS 규격제도 개선

▷규격의 정기적 개선을 법제화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

- 5년마다 기존의 규격을 고치는 것을 법제화 하고 불필요한 규격의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규격제정시에는 국제규격을 고려함

▷사업자 자율표시 제도 도입

- 생산, 제조공정, 검사 등의 품질관리체제 현황을 고려하여 품질의 안정성 및 규격 적합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제조업자는 스스로 JAS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함

▷등록표시기관 등에 민간능력 활용

- 공익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회사도 등록표시기관에 참여가능토록하고 표시등에 대해 민간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건 정비함

▶개정된 동 법률은 7월22일 공포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함.

일본의 유기농산물 JAS규격 신설

(99. 7. 6 일본농업신문에서)

일본 농수산성은 FAO/WHO 합동 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유기농산물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했음을 받아들여 일본농림물자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에 유기농산물 등의 규격신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인증기관을 거치는 유기표시에 산지직판품도 대상으로 하여 비용부담을 주게되는 관계로 관계자 사이에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日농수산성은 CODEX가 결정한 기준이 농수산성이 설정한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심의중인 JAS법 개정안에는 JAS규격제도에 "국제적인 규격의 동향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안이 성립되면 CODEX가 채택한 기준을 고려하여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JAS규격을 1년 이내에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제기준과 같이 "유기"라 표시할 경우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이 필요함을 명기했다.

산지 직판품과 생산·소비자 제휴품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본유기농업연구회 대표간사는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시장유통의 경우에는 인증표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생산농가와 소비자간 신뢰관계로 성립된 생산·소비자 제휴품에는 필요없지 않은가?"라며 "표시를 하게 되면 경비와 노력이 들어 생산농가에게 부담을 주게되므로 자연순환형 농업의 추진에 역효과"임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全農)는 "유기농산물 뿐만 아니라 감(저)농약 농산물 등 다른 농산물도 포함하여 농협전체에서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취급이 가능한 제도를 검토중이라 한다